O.M.R카드 작성요령(견본) 및 수험자 유의사항



수 험 자 유 의 사 항

- ◈ 답안카드 작성시 시험문제지 형별누락, 마킹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.
- ◈ 문제지 유형을 답안카드 문제지 형별란에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기재하고 마킹하여야 합니다.
 (문제지형별과 답안지 형별이 일치하지 않을시는 무효처리됨)
- ◈ 감독위원 날인이 없는 답안카드는 무효처리됩니다.
- ◈ 어떠한 경우에도 답안카드 수정은 불가합니다.(수정액 사용불가)
- ◈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는 등급(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)은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화 됩니다.

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알림

시험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검정을 받을 자격이 정지됩니다.

- ◦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자, 답안지 교환자, 타인의 답안지 및 문제지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,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
- ◦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(무선통신기기 등)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주고 받은 자
- ◦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